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가하천 무단 점용행위 방지 등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밀양시

내 용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하천법」 제105조(권한의 위임)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국가하천에 대해 점용허가, 원상회복 명령 등의 하천 관리업무를 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95조에 따르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법령위반자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천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

금 부과, 행위의 중지, 공작물의 제거 조치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밀양시에서는 ○○동 ***번지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강 둔치에 [표]와 같이 밀양시 ○○○○○○○회, 밀양시 ○○○○ ○○○○회에서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점용하고 있고, 특히 ○○○○○○○회에서는 이용자에게 1일 1회 3,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국가하천을 관리해야 할 밀양시에서조차도 무단으로 파고라, 육각정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표] 국가하천(○○강) 무단점용 명세

<단위 : m²>

점용지 주소	점용시설	개수	점용면적	점용시기	점용단체(대표자)
밀양시 ○○동 ***번지	사각파고라	1	68	2006년	밀양시(○○○)
	육각정자	3	30	2006년	
	컨테이너	2	72	2004년	○○○○○○○○회(○○○○)
	컨테이너	2	72	2004년	○○○○○○○○○○회(○○○)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

국가하천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국가하천 무단 점용행위를 방치하거나 스스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